

일본, 농업현장의 지적재산취급지침 결정

배 민 식*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7년 8월 15일 ‘농업 현장에 있어서 지적재산취급지침’을 발표하였다. ‘농업 현장에 있어서 지적재산취급지침’은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을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본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 등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7년 3월 22일에 작성된 ‘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 현장에 있어서 지적재산취급지침’을 소개한다.

1. 머리말

농림수산업 현장에서는 농업자 등의 노력으로 많은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권리화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었다. 2007년 3월에 수립된 ‘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에서는 농림수산업자, 보급지도원을 포함한 모든 농림수산업관계자가 농림수산업에서의 기술·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농림수산업자,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원, 농협의 영농지도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기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 02-788-4352

1) ‘노하우’에 대해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등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비밀인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도 “2. 기술의 취급 현상은 어떠한가?” 이하에서는 기술 가운데 비밀로 취급되는 것을 ‘노하우’라고 한다.

술·노하우 등의 ‘지적재산’취급지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제1단계로 이번에 농업 현장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노하우 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지침을 작성하였다. 앞으로 본 지침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본 지침은 농업분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지만, 생산·판매 형태, 기술·노하우의 성격은 각 생산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생산분야의 특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업 이외의 임업, 수산업에 있어서는 각각의 업종 상태, 생산품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기술의 취급 현상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주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실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기술이 ‘지적재산’이라는 인식이 적고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현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취급하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여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3. 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현재 농업을 둘러싼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현장의 기술 취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경제의 글로벌화나 IT화가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가치 있는 정보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전략적 작물과 함께 재배기술도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농업에 악영향이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만이 아니고 품질 경쟁도 격화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③ 농업법인이나 농업에 참가한 기업에 있어서 기술의 특허화, 비닉(秘匿)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지적재산을 의식하는 생산자와 의식하지 않는 생산자 사이에 기술에 대한 의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④ 농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에서 이어져 온 기술이 쓰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기술이 올바르게 취급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농업자가 보답 받지 못하는 등 개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농업기술 발전이 저해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지적재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4.1. 기술의 지적재산으로서의 활용

기술은 ‘지적재산’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고, 또 보호도 용이하게 된다.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하고, 수확물을 판매한다”,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및 “기술을 사용하는 권리를 판매한다” 등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업자 자신의 경영전략·판매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

농업에 있어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활용방법과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관계자 개인이나, 혹은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 또는 그룹)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품질 개량을 위한 기술 등은 개별 농가가 단독으로 이용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산지화 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술을 무상으로 생산그룹 등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 때까지 생산량을 확보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생산그룹의 일원으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기술에 따라서는 사용 범위 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방제나 환경부하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중에는 폭 넓은 범위에서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있다.

5. 새로운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1. 권리화·비닉·공개 등 3가지 수단

기술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권리화한다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한다.

비닉한다 : 개발자 개인 또는 한정된 지역·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개한다 :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예를 들면 권리화를 선택할 경우 권리화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택 한 후 활용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수단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 기술 등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령 구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술 등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말고, 또 포장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기술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5.2. 각 수단을 선택할 때 착안점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1) 권리화

권리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첫째, “권리의 실시 또는 허락에 의해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배타적 독점권이 고,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기술

로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견제·배제하고, 기술을 독점 실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로열티를 얻을 수도 있다. 또 허락을 얻지 않고 마음대로 기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한편 기술이 특별한 기계나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혹은 재배 현장을 보면 권리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방을 발견하고도 권리침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특허권의 경우 특허를 출원하면 1년6개월 후에는 그 정보가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누구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특허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소비자에 대한 어필”이라는 것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상품의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할 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기술로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상품에 명시하는 것은 생산자가 개발 능력을 가지는 우수한 농업자 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셋째로, “유통의 용이화”가 있다. 기술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함으로써 유통(사용 허락 등에 의한 기술 매매)이 용이하게 된다. 권리화함으로써 기술을 권리자가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인 농가는 불특정 다수의 농업자를 상대로 해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중개자 등에게 알선을 의뢰하는 것도 용이하게 된다. 또 권리화된 기술의 내용은 공개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농가도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도입을 정할 수 있다.

또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수속은 변리사,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속을 위임할 경

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할까 말까, 권리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등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 ‘농림수산행정담당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입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의 지적재산·지역브랜드 정보) 등)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기본적인 지식】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새로 개발한 기술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식물의 육종, 교배, 재배 등의 방법, 신종 미생물이나 그 이용 방법, 농업기계나 기구, 비료, 농약 등이 있다, 또 식품의 조리방법·장치, 보존방법 등도 보호 대상이 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수속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발생한다.

○ 특허권은 출원, 공개, 심사, 사정, 등록이란 수속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할 때까지 기술 재평가를 실시하여 특허를 취득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 실용신안권은 출원할 때에 출원 수수료와 등록료를 지불하고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다. 단, 권리 침해에 대해 경고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닉

특허공보 등의 기재에 따라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 개발한 기술에 대해 생산물로부터 그 기술이 사용된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권리를 취득하여도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게 된다.

이처럼 권리를 취득해도 실질적으로는 기술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상정

된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화를 행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관계자 이외에게는 내용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비닉’이다.

또 기술 레벨이 매우 높고 경쟁자가 없는 등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내용이 공개되는 권리화를 피하고 한정된 범위에서 비닉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지역의 전략적 작물 등에 대해서는 재배기술을 비닉함으로써 가령 그 작물의 종묘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권리침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해외로의 유출이 염려되는 경우 외국에서의 권리 취득·행사, 사법제도 이용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므로 비닉에 의한 기술유출방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하우스 안이나 격리된 포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용이하게 노하우 실천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노하우를 비닉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공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실행하면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그 기술의 사용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비닉할 필요가 없는 기술의 경우에는 학회에 발표하거나 농업기술에 관한 잡지 등 일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기술에 대해 누구라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것을 ‘공지화/公知化’라고 한다)을 취할 수 있다. (사)발명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지화를 목적으로 발명, 고안을 게재하는 ‘공개기법’을 발행

하고 있다.

단, 공지화해 버리면 그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관련 특허 출원에 있어 거절이유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지화도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5.3. 기술의 ‘문서화’ 필요성

기술을 ‘지적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권리화를 하든 비록하든, 기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 ‘지적재산’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등의 유효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서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① 기술 등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무엇인가
- ② 기술 등의 원리, 기본적인 구조(장치도 등의 도면)
- ③ 기술 등의 구체적인 방법, 순서(필요한 자재나 기계)
- ④ 기술 등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

특히 다른 사람에게 기술 등의 유효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등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데이터를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서화’를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어져온 기술을 전승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한편 ‘문서화’를 하기 위한 작업은 농업자 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급지도원이나 영농지도원 등 현장의 기술지도원에게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때에는 농업자가 개발한 기술은 농업자의 재산이고, 농업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가르쳐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의 경우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로 하기 위해 같은 유형의 기술로 다른 사람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도 하고, 만약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개량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청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특허 선행기술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6. 각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까?

6.1. 권리화하는 경우의 유의점

(1) 해외에서의 권리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그것을 출원한 국가에서만 발휘된다. 때문에 수출확대를 노리는 품목에 관한 기술 등의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국가에서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2)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권리화 할 때 공개된 기술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은 무단으로 실시될 위험이 있다. 또 생산물로부터 그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항수단을 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특허출원의 범위에 주의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재배기술만이 아니라 기상과 같은 외부환경이나 시비량 등도 수량,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

류의 “특허청구 범위”에 발명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치밀한 조건설정(예를 들면 온도관리나 시비의 시점 등)을 기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조건설정은 현실로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구태여 특허출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노하우로서 비밀로 해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권리취득의 효과를 판매전략에 활용한다.

‘특허를 활용한 농산물’로 판매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권리취득 그 자체를 선전하여 보호를 꾀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농약 사용을 줄이는 재배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그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한 판매전략을 취함으로써 그 기술의 무단 사용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③ 다른 권리와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상표권이나 육성자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서로 보완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3) 허락계약 체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허락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락계약조건 등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허락계약조건으로는 허락 종류(전용실시권으로 할까 또는 통상실시권으로 할까)나 허락기간을 어떻게 할까, 허락료는 얼마로 할까, 허락을 받은 사람의 의무(비밀유지 등)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 (사)발명협회 ‘산업재산권표준텍스트 유통편’)

한편 계약에 관한 상담 등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본문 7.1.을 참조)와 상담할 수 있다. 또 계약에 관해서는 변리사·변호사와 상담하고 계약대리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

6.2. 비닉하는 경우 유의점

(1) 비닉 유지를 위한 조치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노하우로 비닉하더라도 자신이 실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노하우를 사용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 앞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기술사용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노하우 사용을 인정하는 상대를 확실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자에 한정하는 등의 주의도 필요하다.

(2) 선사용권에 의한 보호

권리화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권리출원 할 때에 자신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실시 준비를 포함) 경우에는 그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권리(선사용권)가 있다.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기록 등과 같은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 특허청 ‘선사용권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06.6)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방법

비밀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부정하게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비밀을 유출한 자, 유출한 자로부터 부정하게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 사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및 비밀 보유자 이외에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사항의 관리규정 정비 등을 실시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 : 경제산업성 ‘영업비밀관리지침’, 2005.10.12>

7. 상담·지원체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을 제대로 보호·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상담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7.1. 특허유통어드바이저((사)발명협회 등)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는,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으로 부터 각 도도부현((사)발명협회의 각 지방지부 등)이나 TLO에 파견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및 그 유통에 관한 전문가이고 무료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7.2. 변리사(일본변리사회)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출원에 관해 특허청에 대해 행하는 대리수속 등을 하고 상담, 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변리사의 상담은 원칙적으로 유료인데 일본변리사회에서는 ‘특허·의장·상표 무엇이랴도 110번’을 통한 무료특허상담이나 ‘일본변리사회카라반대(隊)’에 의한 지역지재지원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j/press/kanbo/tizai/070815.html>(일본농림수산성) 원역